

2021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신규) : 31.5억원, 21개 과제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분야 : 일반과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예정)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지원분야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일반과제	1년 이내	1.5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 2021. 1. 29.(금) ~ 2021. 3. 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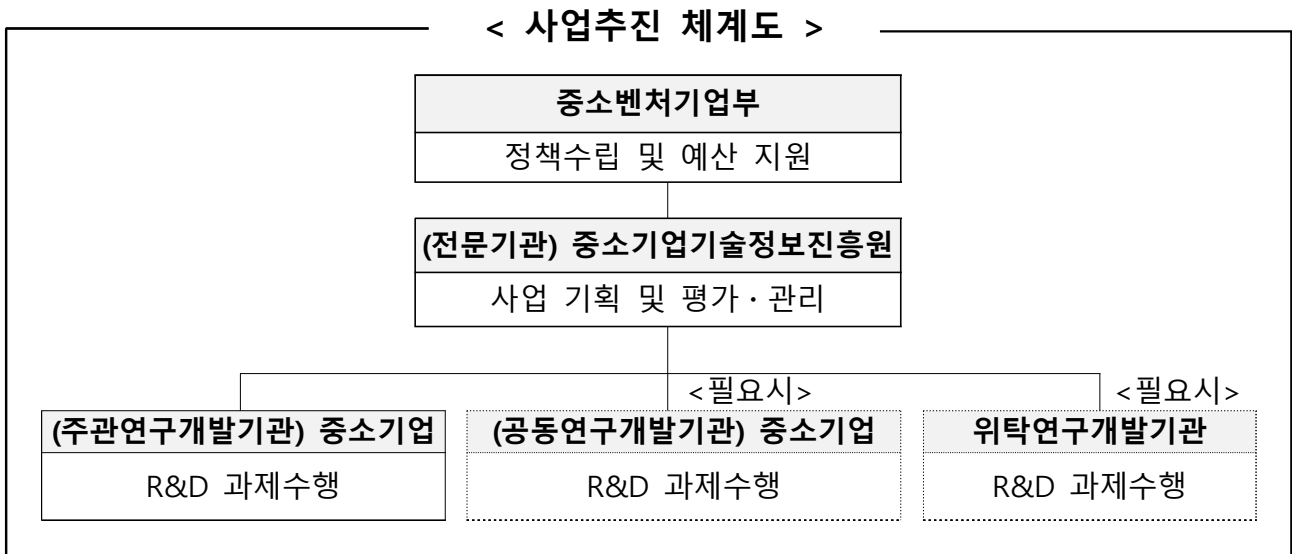
* 전산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3. 2.(화) 18:00까지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동 규정은 개정 중으로, 향후 개정완료 및 확정시 과제 선정 및 협약시 개정된 규정 추가안내 및 적용될 예정

□ 추진체계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1.5억원, 21개 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지원분야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기술개발	일반과제	1차	21	'21.1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의 정책, 신청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신청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대상

-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③ 선정 시 우대사항
 - 동 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5점) 부여
* 단, 동 사업 R&D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이거나 인증의 종류 또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㉑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㉒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㉓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㉕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75%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 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 연간 지원한도 1.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50	18.75	18.75	37.5	187.5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10	10	20	10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①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이 원칙)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 (내국인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단,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총 정부출연금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운영 내용은 과기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기준 : 해당사업의 기술료 징수대상사업인지 표기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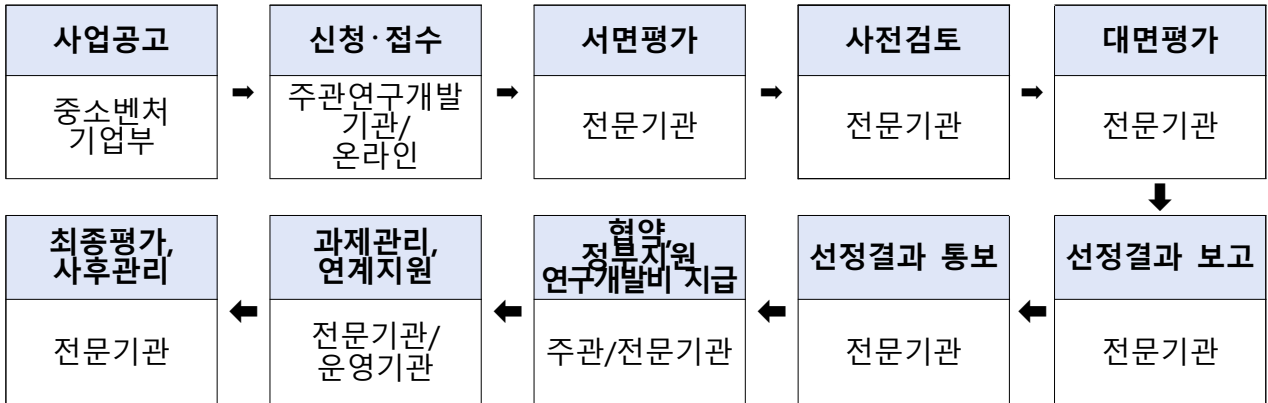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생략 가능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text{종합평점} = \frac{\text{서면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text{종합평점} = \frac{\text{대면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평가기준

○ 단계별 평가 기준

서면평가			대면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5	기술성	창의·도전성	10
	기술개발준비의 적정성 (선행연구, 연구인력, 연구시설 보유 등)	5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10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5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0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5			
사업성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5	사업성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0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5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수출목표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일자리 평가	20
정책부합성	성능지표 목표와 취득 예정 인증 규격과의 적정성, 취득 예정 인증의 중 요도 정도	20	정책부합성	수출계획의 적정성	15
	해외 인증 취득 가능성 및 사전 준 비의 적정성	15		해외 인증 취득 계획의 적정성	15
	수출 국가(제품)과 취득 예정 해외 인증과의 적합성	15			
합계		100	합계		100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1> 참조

○ 동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 · 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아기-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2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 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⑫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⑬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 (KSM) :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⑮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⑯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⑰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2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⑲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⑳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2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또는 10인 이상 증가한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브랜드 -K 선정기업	2점	브랜드-K 인증서 (중소기업유통센터 발급)
②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인증획득 완료기업 ※ 단, 동 사업 R&D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이거나 인증의 종류 또는 국가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	2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발급)
③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G-PASS기업) 지정기업	1점	G-PASS기업 인증서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발급)

***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 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 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i)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된 과제, ii)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iii)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1. 29(금) ~ 3. 2(화)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3. 2(화)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 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1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p>① 1단계 : 회원가입</p> <p>-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p> <p>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p> <p>-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p> <p>③ 2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p> <p>-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p>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2	○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④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	
⑤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1차 서면 평가 통과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제출	○	
③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

④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
⑤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⑥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⑦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⑧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7. 유의사항

①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 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②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혁신역량 단계						



*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 ③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 ④ 상기 ④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㉓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㉔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⑤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⑦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⑩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4)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연구원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02-707-826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 개요

- (인증의 정의) 제품 또는 시스템이 표준, 기술기준 등에 근거하여 일정자격을 갖추었는지 안전성 또는 생산활동 등을 증명하는 행위
- (인증의 종류) 인증은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구분
 - 법정인증 :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 보호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강제인증과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한 임의 인증으로 구분
 - ① 강제인증 : 법정 필수 요구사항으로 미 획득 시 수출 및 유통 불가
ex) 일본 PSE인증, 중국 CCC인증, 유럽 CE인증 등
 - ② 임의인증 : 법정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획득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시장진출 기회 확대
ex) 일본 JIS인증, 중국 CQC인증, 독일 GS 인증 등
 - 민간인증 : 해당 제품분야의 협·단체 또는 대기업 등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민간자체 인증
ex) 일본 S마크, 중국 유기농식품 인증, 미국 UL인증 등

□ 해외 인증 현황 예시

※ 아래의 인증 예시 외에도 수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증의 경우 지원 가능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ASME	ASTM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석유학회)	(미국기계학회)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DR (공기정화률인증)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실내공기질 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HIRF (고강도전자기장)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MIL-STD-901D (미국해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 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BACL,CSA,CSL,FM,IAPMO,ITSNA,MET,NNA,NSF,QAI,QPS,SGS,SWRI,TUVNorth,TUVPTL,TUVSUD,TUVPSG,UL19개기관)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WH-ETL	WHI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환경보호국인증)	(북미건축자재마크)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양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 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 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상업용제품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금융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일본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티평가및인증)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MDA (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 JATE, 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러시아 (신북방)	CU (러시아강제인증)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 MedicalDevices)		
말레이시아 (신남방)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FDA (대만의료기기)
태국 (신남방)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신남방)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 RegulationApproval)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인도네시아 (신남방)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MSDS (중국물질안전보건자료)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hina RoHS (중국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품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구.CFDA-중국의료기기허가 등록)
	NMPA (구.CFDA-중국화장품허가등 록)	SAMR (구.CFDA-중국보건식품허가 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신식품원료및첨가제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RETIE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변압기강제인증)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호주	ACE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이란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 에미레이트	ECAS (전자기기인증제도)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G-Mark (GSO통합인증)
이스라엘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신북방)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미얀마 (신남방)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 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소프트웨어개발역량평가인 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 증)	EAC (CU) (러시아화장품인증) (신북방)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캐트적합성테스트)	FAIR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신남방)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 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PA (클린룸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 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 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마크)
	OCS (유기농섬유인증)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 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 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